



강의전담교원 임용 규정

규정번호	2-3-10
제정일자	2010. 1. 2.
개정일자	2024.4.15.
책임부서/팀·계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의 강의전담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7.04.20.,2019.11.14.개정>

제2조(정의) 강의전담교원은 강의 및 학생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교원을 말한다. <2011.6.15 개정>

제3조(자격 및 직위) 강의전담교원은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 제10조의 규정에의한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임용직위는 강의전담 조교수로 한다. <2017.04.20. 개정>

제4조(임용방법) 강의전담교원의 임용은 「교원신규임용에 관한 지침」에 의하여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국·내외의 전공 관련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대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다. <2017.04.20.,2019.11.14.개정>

제5조(임용기간 및 재계약) ① 강의전담교원의 임용계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평가에 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.

② 재계약은 별지1호서식, 2호서식, 3호서식에 의한 평가결과 총점 100점 만점에 평점 80점 이상인 교원을 재계약대상으로 한다. <2018.11.13.,2019.11.14.,2021.12.23.,2022.06.02.개정>

③ <삭제> <①~③ 2011.6.15. 신설> <2024.4.15. 개정>

제5조의1(정년트랙 전환 및 승진) ① 강의전담교원의 승진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한 후,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승진할 수 있다. <2022.2.28. 제정>

②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은 임용일로부터 4년경과 후 평가에 의해서 전환할 수 있으며, 이전 조교수 기간을 산입한다. <2022.2.28. 제정>

제6조(의무) ① 강의전담교원의 근무일 및 강의시수는 강좌개설 및 시간표 운영 지침에 따른다. <2019.11.14.개정>

② 강의전담교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다. 다만, 다른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위촉받는 경우나 국가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 할 수 있다.

제7조(보수) 강의전담교원의 보수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.

제8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 정관 및 본 대학의 제규정 및 지침 등을 준용한다. <2017.04.20. 개정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의 제5조의1(정년트랙 전환 및 승진)은 202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1]

교육업적 평가표

학과		직위		성명	
평가항목			점수	최대 인정점수	비고
강 의	강의시간	1) 책임시수	3	5	
		2) 책임시수범위 미달 (시수당)	-1		
		3) 책임시수 범위내에서 기본시수 초과 (시수당)	0.5		
	강의설문조사 결과	4) 평점 × 3	.	15	직전학기
	강의계획서	5) 강의계획서 제출 (입력)	2	2	
		6) 미제출 (강좌당)	-0.5		
	강의일수	7) 주3일 이상	2	2	
		8) 주3일 미만	0		
	휴·결강여부	9) 없음	2	2	
		10) 휴·결강 시 (1회당)	-0.5		
성적 평가	성적원부 및 출석부 제출	1) 기한 내 제출	1	2	직전학기
		2) 미제출 (과목당)	-0.5		
	성적정정	3) 없음	1		
		4) 정정 있음 (과목당)	-0.5		
	학점분포	5) A학점 : 40%초과 (과목당)	-0.5	2	직전학기
소 계				30	

[별지 2]

강의전담교원 재계약(학과) 평가표

학과		직위		성명	
----	--	----	--	----	--

번호	평가항목	평가점수				
		A(매우우수) (10점)	B(우수) (8점)	C(보통) (6점)	D(미흡) (4점)	E(매우미흡) (2점)
1	학과발전 기여도					
2	강의능력 및 충실성	A(매우우수) (10점)	B(우수) (8점)	C(보통) (6점)	D(미흡) (4점)	E(매우미흡) (2점)
3	교수로서의 책무와 자세	A(매우우수) (10점)	B(우수) (8점)	C(보통) (6점)	D(미흡) (4점)	E(매우미흡) (2점)
합 계(30점)		점				

종합의견	
------	--

20 년 월 일

학과

직위

성명

(인)

신안산대학교 총장 귀하

[별지 3]

강의전담교원 재계약(총장) 평가표

학과		직위		성명	
----	--	----	--	----	--

번호	평가항목	평가점수				
		A(매우우수) (15점)	B(우수) (12점)	C(보통) (8점)	D(미흡) (5점)	E(매우미흡) (2점)
1	대학발전기여도					
2	교수의 자질 및 능력	A(매우우수) (15점)	B(우수) (12점)	C(보통) (8점)	D(미흡) (5점)	E(매우미흡) (2점)
3	신입생 유치 및 학생 지도능력	A(매우우수) (10점)	B(우수) (8점)	C(보통) (6점)	D(미흡) (4점)	E(매우미흡) (2점)
합 계(40점)		점				

종합의견	
------	--

20 년 월 일

직위 총장

성명

(인)

항목별 세부 평정기준

평가영역	평가항목	평가기준	평가점수
[별지3] (학과) 평가표	학과발전기여도	학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 및 발전 기여도(취업, 충원) 등의 실적에 대한 평가	A(매우우수) 10점 B(우수) 8점 C(보통) 6점 D(미흡) 4점 E(매우미흡) 2점
	강의능력 및 충실성	강의 능력 및 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	A(매우우수) 10점 B(우수) 8점 C(보통) 6점 D(미흡) 4점 E(매우미흡) 2점
	교수로서의 책무와 자세	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, 대학내의 제 반규칙 및 학사행정 업무 준수에 대한 평가	A(매우우수) 10점 B(우수) 8점 C(보통) 6점 D(미흡) 4점 E(매우미흡) 2점
[별지2] (총장) 평가표	대학발전기여도	대학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 및 발전 기여도 등의 실적에 대한 평가	A(매우우수) 15점 B(우수) 12점 C(보통) 8점 D(미흡) 5점 E(매우미흡) 2점
	교수의 자질 및 능력	교수로서의 강의 능력과 교수들간의 인 화 관계 등에 대한 평가	A(매우우수) 15점 B(우수) 12점 C(보통) 8점 D(미흡) 5점 E(매우미흡) 2점
	신입생 유치 및 학생 지도능력	학과 신입생/재학생 충원율 및 학생 지 도 능력 평가	A(매우우수) 10점 B(우수) 8점 C(보통) 6점 D(미흡) 4점 E(매우미흡) 2점